

대통령 보고서 II (상세)



(www.cein.go.kr)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교원승진·교장임용제도 개선방안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8.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 교원양성제도 개선안 요약 ◀

1.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정

- 신규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하는 「신규교사 자격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고시' 형태로 제정
- 교사양성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제시 [전공 50학점(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이상, 교직 22학점(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이상]
- 졸업성적이 일정 기준(졸업평점평균 100분의 75)에 미달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미발급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

- 현장 적합성과 교직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구성
- 교육실습을 4학점 이상으로 개편(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을 2학점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음)
- 교원양성기관 교수 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 채용 확대, 교원양성기관의 교수인력 학교현장 연수제 실시, 교원양성기관과 일선학교의 공동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현장과 교원양성기관간 교류활성화

2.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제고

□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법제화하여 2주기 시험 평가가 완료되는 '09년부터 시행
-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인정기관 또는 비인정기관으로 판정

□ 교원양성제도의 전문화·특성화

-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학과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 유도
- 중등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양성기관의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축소 조정하거나 일반학과(대학)으로의 전환 유도
 -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중점
 -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외의 분야로 특성화 유도
 - 교육대학원은 현재 교원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 승인제 도입
- 현행 4년의 교원 양성기간을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3. 교원 선발제도의 적합성 제고

□ 현행 공개전형제도의 개선

- 현행 교원선발 방식의 2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전환하고, 2차(논문형) 및 3차(면접, 수업실기능력)시험에서 교사로서 자질을 중점 평가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1차 지필고사 성적 제외 및 가산점 반영 비중 조정

□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

- 교육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감 추천 농산어촌 교사지원자 특별전형 확대
- 교원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고, 근무 교사에 대한 유인책 마련

□ 전문교과 및 선택교과 담당교사 충원방법 개선

- 희소교과 등 정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선택교과의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경로 마련

차 례

요 약	3
I. 추진 배경 및 경과	9
1. 추진배경	9
2. 추진경과	10
II. 교원양성제도 현황 및 문제점	12
1.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저하	12
2.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약화	13
3. 교원임용시험의 교직적격자 선발기능 취약	14
III.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15
1.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16
2.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제고	20
3. 교원선발제도의 적합성 제고	24
IV. 기대 효과	28
V. 추진 계획	29
[붙임자료]	
외국의 교원양성제도 및 시사점	30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필요

-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교수-학습방법,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 시급

※ OECD 정책제언('03)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혁을 우선과제로 제안

□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이행에 대한 요구

-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부여 시스템에 대한 질 관리 요구 점증
-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확립 및 전문화·특성화 필요

□ 교사적격자 선발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 지필고사 중심의 선발방법에서 실제적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선발방법으로의 전환 요구 증대

2. 추진경과

	정책 배경 및 방향	성과와 한계
문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원의 과도한 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와 교직과정의 정비 추진 • 교육대학의 종합대학 또는 사범대학과의 통합 논의 • 교원양성의 주축을 대학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정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실효성 미약 • 국립사대 및 교직과정 승인인원 감축으로 교원양성인원 조정이 이루어짐. • 교육대학의 구조 개혁과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양성 방안은 논의수준에 그침.
국민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민정부의 교원양성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교육대학 구조개혁,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검토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교육대학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 산학겸임교사 확대,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법제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이외에는 논의 수준에 그침.

□ 참여정부의 교원양성제도 개선 노력

- 참여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중점 공약 중 하나로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자격·양성체제개편추진 위원회」('03. 9. ~ '04. 6.)와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04. 3. ~ 12.)을 구성하여 쟁점별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 수립

-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시안)’을 확정하여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05. 10.).

□ 교육혁신위원회의 개선방안 마련

- 교육혁신위원회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하에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구성(‘06. 1.)
-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토 요청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지역순회 토론회를 비롯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양성제도개선안을 심의하여 질 높은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확정(‘06. 6. ~ 8.)

Ⅱ. 교원양성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저하

□ 국가수준의 교원자격 및 교원양성 교육과정 기준 부재

-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부재로 교원양성기관에서 형식적인 검정절차만을 거쳐 자격증 부여
-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수준의 최소 기준 부재로 양성기관간 교육과정 구성에서 차이 발생

<사범대학 졸업학점 현황>

대학명	이수 구분	총소요 학점	전공 학점	교직 학점	교양 학점	자유 학점	비 고
경북대	공통	150	48	23	30	49	△ 전공학점에 교과교육 6학점 포함
전남대	인문	140	49	20	24	47	
교원대	공통	140	48	27	21	46	△ 복수전공 42학점, 교과교육 6학점
전북대	공통	150	42	22	27-39	50	
서울대	공통	130	42	21	36	31	△ 교직과목중 교직이론 9학점 이상

※ 사범대간 교과교육학·교과내용학 이수학점 비율이 32~68%로서 대학별 상이

□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부족

- 교육현장의 요구와 유리된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 형식적인 실습,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저하

2.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약화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체제 미약

-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법제화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조성 노력 촉진에 한계

□ 교원수급 불균형 및 양성과정별 특성화 미흡

-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대학의 구조 개혁 노력 미흡
- 중등의 경우 양성기관 종류별 역할분담 없이 동일분야 중복 양성
 - ※ 사범대와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동일 표시과목 교원을 동시에 양성하는 사례도 상당수
- 양성자원 과다로 인적자원 활용도 저하

< 연도별 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현황 >

(기준 : '06. 6. 현재)

구 분	양 성				임 용					임용률 (%)
	사범계 학과	교직 과정	교육 대학원	계	국·공립교원			사립 교원	계	
					사범계	교직 과정	교육 대학원			
2003	13,918	10,100	4,601	28,619	3,077	2,300	90	1,914	7,381	25.8
2004	15,395	9,862	4,889	30,146	2,457	817	317	1,611	5,202	17.3
2005	17,366	10,312	5,599	33,277	3,256	1,017	362	1,873	6,508	19.6
계	46,679	30,274	15,089	92,042	8,790	4,134	769	5,398	19,091	27.9

※ 유치원·특수 및 비교과 교사 분야 제외, 양성인원은 복수전공 자격취득자 포함

3. 교원임용시험의 교직적격자 선발기능 취약

□ 1단계 시험의 과도한 영향력

- 1차 지필고사의 결과가 최종합격자 결정에 과도한 비중 차지

□ 실제적 교직수행능력 평가 미약

- 필기시험 위주 선발로 교사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 및 교직원, 교수 능력 등 실제적 교직수행능력 평가에 한계

Ⅲ.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1-1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정

□ 신규교사 자격기준 제정

-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교사의 기본적 자질과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등의 형태로 제정
- 이를 토대로 각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원 선발에서 중점 평가요소 등을 설정
-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개정

□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설정

<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

현 행 (교직과정만 규정)	개 선(모든 양성과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 교직 20학점 - 교직이론 14 - 교과교육 4 - 교육실습 2 	전공 (5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공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 교과교육 8학점
	교직 (2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 교육실습 4학점이상 -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을 2학점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음(단,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실습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계 : 62학점	계	72학점(증 10학점)

- 전공·교과교육학·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교육실습별로 이수해야 할 주요과목, 최소 이수학점 등 규정
 - 전공교과의 경우 50%는 국가기준으로 명시, 교직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 제시
 - 국가수준에서 정하는 세부 교과목은 관련 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일정 주기로 개정
-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교원자격검정령에 제시
- '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무시험검정 관리체제 개선

-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자격증 부여여부 심사 실질화
- 졸업과 교원자격취득의 분리
 - 일정한 자격기준(졸업성적기준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5점)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 미발급

1-2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 현장 적합성과 교직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구성
 - 현행 교직과목 체제 개편
 - : (예시) 인간에 대한 이해,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교육법,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특수아동의 이해 등의 교과목 추가

-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공교과의 편성과 운영

: (예시) 논술지도,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 추가

○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

□ 교육실습의 내실화

○ 교육실습 최소기준 상향조정(4학점 이상)

-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을 2학점 이하로 인정

○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 개발·적용

- 실습기간, 실습 중점사항, 실습학교 확보기준 등 제시

- 실습을 2~4학년 단계에서 교육과정에 맞게 나누어 실시 가능

- 평가인정제를 통하여 사범대 부설학교 확보 적극 유도

○ 시·도교육청에 「교육실습」 담당부서 지정·운영

- 교원양성기관의 실습수요와 실습지원 초·중·고 연계를 지원

○ 교원양성기관과 실습지원 초·중·고간 교류 협력 활성화

- 교대 및 사범대 부설학교를 자율학교 등으로 지정,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 활성화

- 실습지도 교사를 교원양성기관의 (실습)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

□ 교육현장과 양성기관간 교류 활성화

-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교육 경력자 채용 확대
 - 교과교육 전공교수는 교사 경력자 채용 권장
 - 현장교사를 겸임교수 또는 초청강사로 활용
- 교원양성기관 교수인력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교현장연수제 실시
 - ※ 경인교대 : 신입교수를 1학기동안 부설학교에 지원·겸무하게 함.
- 교원양성기관의 교수와 일선학교 교원의 공동 연구 및 교육활동 권장
- 교육현장과 교원양성기관과의 교류활성화 정도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

2.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제고

2-1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법제화하여 '09년부터 시행

교원양성기관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예시)

- 교수 1인당 학생수 :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용
- 교과교육 전공교수 : 국민공통 기본교과 대상, 학과당 1인 이상 확보
※ 겸임·초빙교수 가능 (단, 이 경우 교수1인당 학생수 산출기준에는 제외)
- 교직교과 담당교수 : 대학별 교원양성 총 승인인원(사범대정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00명당 1인
- 교육과정 : 최소기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시설 및 설비 : 수업행동 분석실, 멀티미디어제작실 등 확보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전반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평가함

※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 질 평가원'(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을 비정부기구로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사 업무 전반, 특히 교육과정, 학습자료 구비 수준,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인정기관 또는 비인정기관으로 판정

- 인정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 등 추가
- 비인정대학은 교원양성기능 제한 또는 폐지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 「교원양성 및 자격검정심의위원회(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교원양성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재편
 - 교원양성에 관한 실질적 정책심의 기능 수행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제기준 설정, 자격검정기준, 평가인정에서 비인정기관으로 판정된 양성기관 조치방안 등 심의

2-2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편 유도
 -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대학의 구조 개혁 및 통합 유도

《권장 개편유형(예시)》

 - ① 교육대학과 인근 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 교육대학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은 현행대로 유지
 - ②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학의 통합
 - 통합시 소규모 대학의 영세성을 극복, 재학생의 교육력 제고 및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경우
 - ③ 인근 교육대학간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 ④ 교육대학과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별도의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

□ 중등교원 양성체제 정비

- 중등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각 양성기관의 중등교원 양성인원 축소·조정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

-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범대 및 사범계 학과는 양성인원을 축소하거나 양성기능 제한
- 평가결과 우수 사범대 및 사범계학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추진

<교직과정>

-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인정 등에서 사범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교직과정은 양성인원 축소 또는 폐지
- 장기적으로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않은 분야로 특성화 유도

<교육대학원>

-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으로 분리 운영 유도
 - 교수확보 정도, 양성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 설정(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현재 교원양성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대학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 도입

- 현재 동일 전공에서 교원 양성과 연수 기능을 둘 다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성과정과 연수과정 분리 운영

○ 교원양성 기능을 가진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 적용되는 신규교사 자격기준,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평가인정 최소 기준 등 각종 기준 공통 적용

□ 양성기간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검토(장기과제)

○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의 교원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여부 검토 필요

○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10년까지 도입여부 확정

◆ 5년 양성(안) : 학·석사 통합형 ◆

- 교사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및 경험 축적, 특기적성 지도능력 강화 효과 기대
- 15주 이상(1학기) 교육실습 기간 확보 용이
- 현행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환 용이
-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6년 양성(안)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

-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교원을 학습지도 전문가로 육성
- 실습 내실화 및 교직 분야 중점 교육 기대
-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중 요건충족 대학을 단계적으로 전환
- 전문분야 인력은 전문성을 검정, 1년 특별양성과정도 개설
- 실업계교과(현 교직과정 양성분야) 교원양성에 대한 대책 필요
-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3. 교원선발제도의 적합성 제고

3-1 공개전형제도 개선

□ 전형단계 및 교직원 평가비중 확대

- 현행 2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확대
- 1단계 시험성적은 예비합격자 선발에만 사용
- 1단계 시험에서 가산점 및 대학 재학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 교육청별 자율 조정
 - ※ 초등학교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09학년도부터 1단계 전형을 대학 재학 성적으로 대체 권장
- 2차(논문형) 및 3차(면접, 수업실기능력)시험에서는 교사의 자질 및 교직수행능력을 중점 평가
- '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교원임용시험 개선 방향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1단계전형 (1차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고사(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20점, 4지선다) - 전공(80점, 서술·단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은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점) ▶ 대학 재학성적(20점) ▶ 가산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고사(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및 전공(초등은 교과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형태 (선택형, 서술·단답형) 및 배점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 ▶ 대학 재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130% 선발	150~200%* 선발
2단계전형 (2차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 면접 ▶ 실기평가 ※ 교육청별 총50~6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형 시험(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중등 :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전공능력
	100% 선발	130~150%* 선발
3단계전형 (3차시험)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 실기능력 평가(100점)
	-	100% 선발
합격자 사정	1차 시험, 2차 시험 점수합산 (130점) + (50~60점)	2차와 3차 시험 성적만 합산
특 징	1차 시험 중심형 ※ 최종합격자 결정에 1차 지필 고사 영향력 과다(총점의 55% 정도)	2~3차 시험 중심형 ※ 1차 시험은 예비합격자 선발에만 활용

* 1,2차 시험 합격자 비율은 적정수준에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시·도교육청별 선발방법의 다양화

- 1단계 전형의 시험유형(선택형, 서술·단답형 등) 및 배점비율 다양화, 3단계전형에서 각종 교육과정 이수활동 등 반영내용 자율화
- 필기시험의 출제범위와 영역 등을 고시
- 교직적성 심층면접에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해당 시·도 교육청에 권고

3-2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

□ 「교육감 추천제」 확대

- 교육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감 추천 농산어촌 교사 지원자 특별전형 확대
-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복무의무 부과

□ 초등교원 양성자원의 적정 규모 유지

- 주기적으로 초등교원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요대비 양성인원의 규모를 적정 수준 유지

□ 수당 인상 등 농산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유인 제공

□ 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특별채용제도 도입

○ 교원양성기관의 장 추천자 대상 특별채용

○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교사공모를 통한 특별채용

○ 일정기간 복무의무 부과

3-3	전문교과 및 선택교과 담당교사 충원방법 개선
------------	---------------------------------

□ 희소교과 등의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 정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선택교과의 경우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연수 후 특별채용 방안 검토

□ 산학겸임교사 활용 범위 확대

○ 일반교원이 지도하기 어려운 분야, 교과교사와 협력학습이 효과적인 분야 대상

○ 자격기준 적용범위의 확대 및 기준 완화

※ 제2외국어,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신규발생 교과 등

※ 관련분야의 직무 5년 이상 → 3년 이상 등

IV. 기대 효과

- 교직전문성 개발에 대한 예비교사의 동기 촉발
 - 교원자격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기준 마련은 예비교사로 하여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게 함.

-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강화
 -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기준 마련과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정제의 실시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을 충족하도록 투자를 촉진함.

- 시·도교육청의 우수교원 선발 노력 촉진
 - 교육청별로 선택형, 서술·단답형, 논문형 등 다양한 시험유형을 자율적으로 택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배점비율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도록 함.

- 학부모들의 교원들에 대한 신뢰 증대
 -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양성되는 교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증대함.

V. 추진 계획

- 후속조치 기본계획 수립 : '06. 9월
- 국가수준의 법령 및 제도정비 : '07. 8월까지
- 양성기관(대학) 수준의 제도 정비 : '08. 2월까지
- 양성제도 개선안 적용 : '08. 1월

<붙임자료>

▶ 외국의 교원양성제도 및 시사점 ◀

1. 주요국의 교원양성제도 동향

□ 미 국

- 종합대학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주로 양성
- 교원 지망자 부족으로 자격을 갖춘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주정부가 승인한 교육기관 졸업자로 자격시험 통과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세밀한 교원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으로 질 관리에 주력
- 최근 신규 교원의 질 관리 방안으로 대학의 양성과정 개선·강화와 대학 외의 대안적 교원양성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간 논쟁이 활발

□ 영 국

- 1998년부터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국가기준과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정, 질 관리 체제를 구축
- 1999년부터 공립학교 근무 신규교사에게 일정기간 수습을 의무화
- 방만한 교원양성 과정을 정비, 교육대학·대학의 4년제 교원양성 과정·3년의 대학과정을 마친 후 1년간 학습하는 PGCE(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3가지 경로로 운영

※ PGCE로 교원양성 경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

○ 교원 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선발을 통하여 이루어짐

□ 프랑스

○ 1989년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의 종합교원양성기관인 IUFM (Institute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itres)로 단일화

○ 총 교육기간은 5년, 국가가 교원양성을 직접 관리

※ 학부3년 이상 교육 → IUFM 1년 → 교사 선발고사 응시 → IUFM 2년차 (연수교사 신분, 현장 연수 이수후 교사자격증 부여)

○ 임용은 자격 취득자 대상, 등록된 지역에서 등록 순서에 의함

□ 독일

○ 종합대학교에서 교직과정 형태로 양성

○ 2단계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교원자격증 부여

○ 석사학위를 요건으로 하며, 시보형태의 현장실습을 강조

※ 2년간 수습근무(정식교원의 50%대우), 수습 2년차에 구술·논문시험 통과 후 교사자격 부여

○ 최근 미국·영국에 비하여 긴 재학연한 및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범대 형태(학사학위)로 교원양성체제 전환을 추진 중

□ 일 본

-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과 중학교 교사의 약 50%는 국립 교육 대학에서, 나머지 교사는 종합대학의 교육학부 등에서 교직과정 형태로 양성
- 최근 전문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
 - ※ '04.8.10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의무교육개혁안'에 포함됨
- 최근 교원양성 커리큘럼 개선을 추진, 교과에 관한 과목의 비중을 줄이고 교직에 관한 과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

2. 시사점

- 방만한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교원양성 경로를 체계화 하는 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하여 노력
 - ※ 영국 : PGCE, 프랑스 : IUFM, 독일 : 4년제 사범대 형태 도입 검토
- 자격취득 과정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과 대외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중점 추진
 - ※ 교사양성과정 평가인정제 (미국·영국), 자격기준 강화 (일본·프랑스)
-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든지 공급과잉(특히 중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든지간에 양성기관 질 관리를 통한 유능한 교원의 양성에 주력

□ 각국의 실정에 따라 교육청·학교구 또는 학교단위 선발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

※ 프랑스 : 전국단위 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21%만 합격

※ 일본('01년도 임용시험 합격률) : 초등학교 11%, 중학교 6%, 고등학교 7%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교사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질적인 수준에서 매우 양호함. 그러나,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이 부재하고 질 관리 체제가 미흡함. 이로 인하여 양성되는 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전반에 대한 질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교원 선발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직적격자 선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